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8.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5.)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2.26.)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

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윤덕의원)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

본계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건오)

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안 제14조)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2.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지정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⑦ (생략)</u>	

(2) 검토의견

- 역사문화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및 후백제 9개 권역으로 구성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한 고유한 특성을 역사문화 특화경관으로 형성·유지·발전시켜 지역의 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¹⁾.

○ 국가유산청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요청 시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²⁾).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

○ 한편, 해당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지구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시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지정과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14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정 규정은 현행법 제17조제6항제2호에서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 이미 지구단위계획 지정 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차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도 검토의견과 같은 입장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⑥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
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또한, 안 제14조제7항제2호의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및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의견임.

나. 시행계획에서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허용 기준 설정(안 제16조 및 제17조)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시행계획에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생략) ③ ~ ⑦ (생략)	②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u>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정비사업의 시행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³⁾.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택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도로 신설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⁴⁾.
- 그런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없이 정비구역 전체가 현행법 제16조에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 개간, 토석류 채취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정비사업

-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채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구역과 행위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 행위 등 제한의 구체적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더라도 해당 시행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실시계획 승인주체 변경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시·도지사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u>국가인</u> 경우에는 <u>시·도지사의</u>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 ----- <u>국가</u> <u>유산청장</u> ----- -. ----- <u>제18조제1항제3</u> <u>호또는 제4호인</u> 경우에는 <u>시장</u> <u>·군수·구청장의</u> 의견을 들어 <u>국가유산청장의</u> 승인을 받아야 <u>한다.</u>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가</u>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u>시·도지사의</u>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	② <u>국가유산청장이</u> ----- - <u>승인할 때</u> ----- -----

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승인한 때-----

--.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하는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하는 사항

③ (생략)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u>시·도지사가</u>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u>변경승인</u>을 하거나 <u>중앙행정기관의 장</u>이 <u>실시계획을 작성할 때</u>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u>시·도지사가</u>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거나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u>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 -----<u>국가유산청장이</u>----- -----<u>변경승인</u>을 할 때----- ----- ----- ----- ----- ----- ----- ----- ----- ----- ----- ----- -----. ② <u>국가유산청장이</u>----- -----<u>승인·변경승인하는</u>----- ----- ----- -----
---	---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u>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 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 최할 수 있다.</u>	③ <u>국가유산청장</u>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역사문화권 정비의 계획체계는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
는 ‘정비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정비시행계획’,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으로 구성됨.
 - ‘정비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
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5개년의 역사문화권 사업추진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임.
 - ‘정비시행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비기본
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실행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실행의 계획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설계도서 및 자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⁵⁾.
-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인 시행계획은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정비사업의 시행자, 자원조달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해당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⁶⁾.

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자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

-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⁷⁾.

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려는 것으로,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 다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 한 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특성에 맞게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

현행법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지정 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4조제7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지정 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제7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 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u>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u>⑦ -----</u> ----- ----- ----- <u>「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 <u><삭제></u>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구역”을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를 “승인할 때”로, “승인 또는 확정할 때”를 “승인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하는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하는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를 “변경승인을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을 “승인·변경승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u>
<u>⑦ (생략)</u>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u>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5. (생략) ② ~ ④ (생략)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u>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u> ----- ----- -----. -----.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신설>

13. (생략)

③ ~ ⑦ (생략)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
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
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
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 7. (생략)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
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국가
유산청장-----
-. -----제18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 ~ 7.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할 때-----

하며, 승인 또는 확정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승인 한 때-----

-----.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요하는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요하는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u>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u> <u>장은</u>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 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 최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③ <u>국가유산청장</u>-----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